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7. 14 선고 2016가단2474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6. 16.

판결 선고 2017. 7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1. 1.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

판사이종훈

별지